

CR 2009 - 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퇴직연금 가입기업 대상－

2009. 10

류건식 • 이상우

CEO
Report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퇴직연금 가입기업 대상－

2009. 10

류건식 • 이상우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I . 검토배경	1
II . 퇴직연금 가입실태	2
1. 가입 퇴직연금 유형 및 금융회사	2
2. 금융회사의 가입권유 실태	4
3.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실태	8
4. 불만사항 및 사업자 변경의향	11
III . 퇴직연금 인식실태	14
1. 퇴직연금 상품선택시 고려요인	14
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고려요인	15
3.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정도	16
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7
IV . 정책적 시사점	20

I. 검토배경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9년 9월 현재, 9조 1,047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장규모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
- 그럼에도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을 볼 때 미국은 87.5%, 일본은 1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7%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 활성화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 및 니즈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 역시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 및 니즈를 파악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자세의 전환이 매우 중요함.
- 이에 퇴직연금 수요자인 퇴직연금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
- 총 1,679개 사업장 중 314개 사업장이 최종 응답(회수율: 18.7%)
- 설문내용 : 퇴직연금 가입실태 관련 내용(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실태 등), 퇴직연금 인식실태 관련 내용(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 본고는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Ⅱ. 퇴직연금 가입실태

1. 가입 퇴직연금 유형 및 금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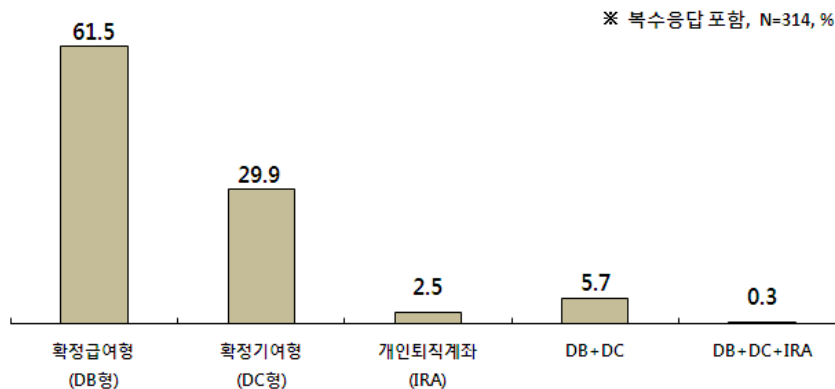
가. 가입유형

□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대체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A)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위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61.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29.9%, 개인퇴직계좌(IRA)에 2.5%의 기업이 가입함으로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에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형태의 퇴직연금에는 5.7%,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기업형 개인퇴직계좌” 형태의 퇴직연금에는 0.3%만이 가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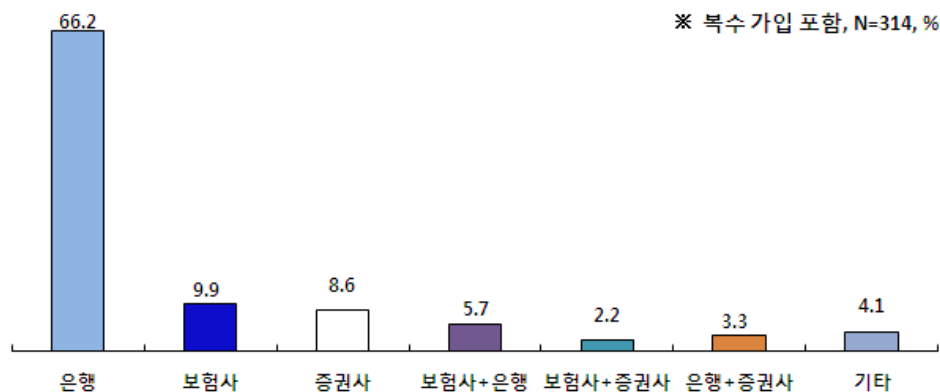
<그림 1>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나. 가입 금융회사

- 퇴직보험을 해지한 후 대부분의 기업은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재가입한 기업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있음.
- 전체기업(N=314)중 66.2%인 208개 기업이 은행에 가입한 반면,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재가입한 기업은 9.8%인 31개 기업임.
- 특히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기업보다 단일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단일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한 기업은 전체기업의 84.7%인 266개 기업인 반면, 보험+은행 등과 같이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한 기업은 15.3%인 48개 기업에 그치고 있음.

<그림 2>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



- 보험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의 64.5%, 은행에 퇴직연금

을 가입한 기업 63.9%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사 및 은행은 상대적으로 증권사에 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비율이 높음.

- 다만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상품 가입 유형

(단위: %)

구 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퇴직계좌 (IRA)	DB+DC
보험(N=31)	64.5	32.3	3.2	-
은행(N=208)	63.9	31.3	2.9	1.9
증권(N=27)	40.7	55.6	3.7	-

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업 제외

2. 금융회사의 가입권유 실태

☐ 사업자 변경 경험기업

- 응답기업 중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9%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0.1%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있음.

<표2>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경험 유무

응답 기업	변경한 경험이 있는 기업	변경한 경험이 없는 기업
314개 기업	283개 기업	31개 기업
100%	90.1%	9.9%

□ 또한 종전의 퇴직보험에서 현재의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기업 비중은 78.4%, 종전의 퇴직연금에서 현재의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기업비중은 21.6%로 낮은 수준임.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보험+증권, 보험+증권, 은행+증권, 보험+은행+증권)에 가입한 기업을 제외한 238개 기업의 약 78.6%인 187개 기업은 은행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여 가입함.

* 복수사업자 변경기업의 경우 사업자의 영향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표3> 사업자 변경 형태 및 변경후 가입 금융회사

구 분		기업(사례)수	종전 퇴직보험→ 현재 퇴직연금	종전 퇴직연금→ 현재 퇴직연금
전체 변경기업		283	78.4%	21.6%
단일 금융 기관	보험	27	81.5%	18.5%
	은행	187	72.7%	27.3%
	증권	24	87.5%	12.5%
	소계	238	75.2%	24.8%
복수 금융 기관	보험+은행	17	100.0%	0.0%
	보험+증권	7	100.0%	0.0%
	은행+증권	10	90.0%	10.0%
	보험+은행+증권	11	90.9%	9.1%
	소계	45	95.6%	4.4%

주: 사례수 30건 이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부족

- 이에 반해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재선정한 경우는 약 11.3%인 24개 기업에 불과하여 대체로 해지된 퇴직보험 대부분은 은행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퇴직연금 가입권유

- 사업자 변경 경험이 있는 238개 기업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분석하여 가입한 기업비중은 47.9%, 금융회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한 기업 비중은 52.1%인 것으로 나타남.

<표4> 퇴직연금 가입권유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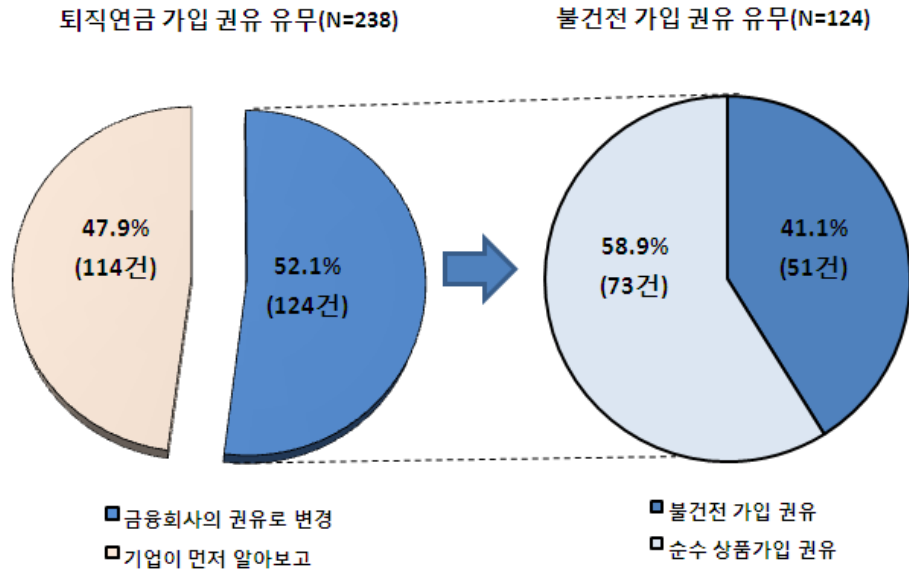
구분	사업자 변경기업(N=238)		금융기관 권유가입 기업(N=124)	
	기업이 먼저 알아보고 변경	금융회사 권유에 변경	순수 가입권유	불건전 가입권유
기업수	114	124	73	51
비중	47.9%	52.1%	58.9%	41.1%

주 : 순수가입권유는 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게 적절한 상품을 권유하여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따라서 금융회사의 권유에 의해 퇴직연금 가입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금융회사 권유 중에 불건전 가입권유(조건부 가입권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1.1%인 51개 기업에 이르고 있어 불건전 가입권유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3> 순수 가입권유와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



* 불건전 가입권유(조건부 가입권유) 행위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을 허용하는 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 금융회사별 불건전 가입권유 실태

- 사업자 변경기업(N=238건)에서 차지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은 각각 19.3%, 1.3%, 0.8%인 것으로 은행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가 상대적으로 심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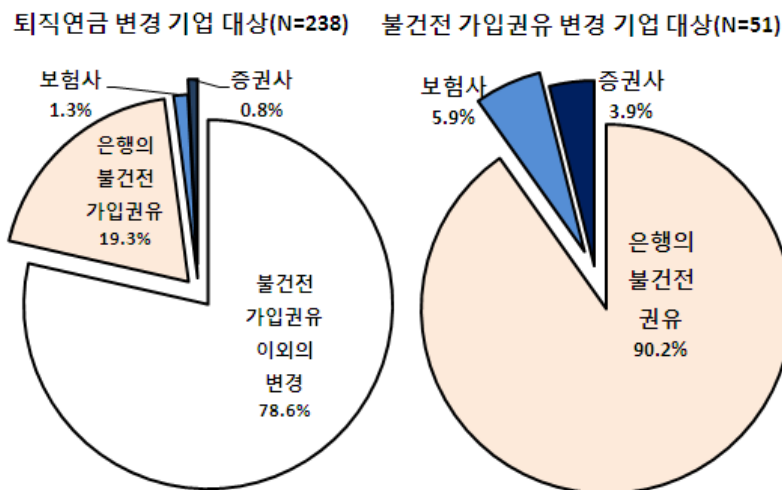
금융회사전체의 불건전 가입권유(N=51)중에서 은행의 불건전 가입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0.2%에 이르고 있어 압도적임.

<표5> 금융회사별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사업자 변경기업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기업 ^{1,2} (A)	불건전 가입권유로 가입한 기업수(B)			
	은행	보험사	증권사	계
238	46 (90.2%)	3 (5.9%)	2 (3.9%)	51 (100.0%)

주: 1) 보험+ 은행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기업 제외
2) 보험사 및 증권사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부족(표본수 30개 이하)

<그림4> 금융회사별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



- 즉 불건전 가입권유는 주로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험사 및 증권사의 불건전 가입권유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임.

3.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실태

-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들은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서비스(근 퇴법상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가입한 이후의 사후관리서비스 중 응답기업의 절반이

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약사항안내(67.5%), 적립금의 운용현황을 비롯한 기록·보관·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원 설명회(51%) 등임

응답기업의 40%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 제도설계 컨설팅(45.5%),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42.7%), 투자성향 분석 및 운용지시(41.1%), 취급실적 안내(40.1%)

응답기업의 20%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 수탁회사 보고서(23.9%),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27.7%), 적립비율 변경안내(31.2%), 자산운용 보고서(25.5%)

○ 반면에 연금계리서비스(8.3%), 재정건전성 검증(12.4%)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제공받고 있음.

<표6> 가입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실태 (N=314)

서비스 항목	계약 사항 안내	운용현황 기록/보관통지	가입자 교육	종업원 설명회	제도 설계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투자성향 분석 운용지시	취급실적 안내
%	67.5	58.6	54.8	51.0	45.5	42.7	41.1	40.1
서비스 항목	적립 비율 변경안내	운용 방법 제시	자산운용 보고서	수탁 회사 보고서	재계산	재정 건전성 검증	연금 계리 서비스	기타
%	31.2	27.7	25.5	23.9	20.4	12.4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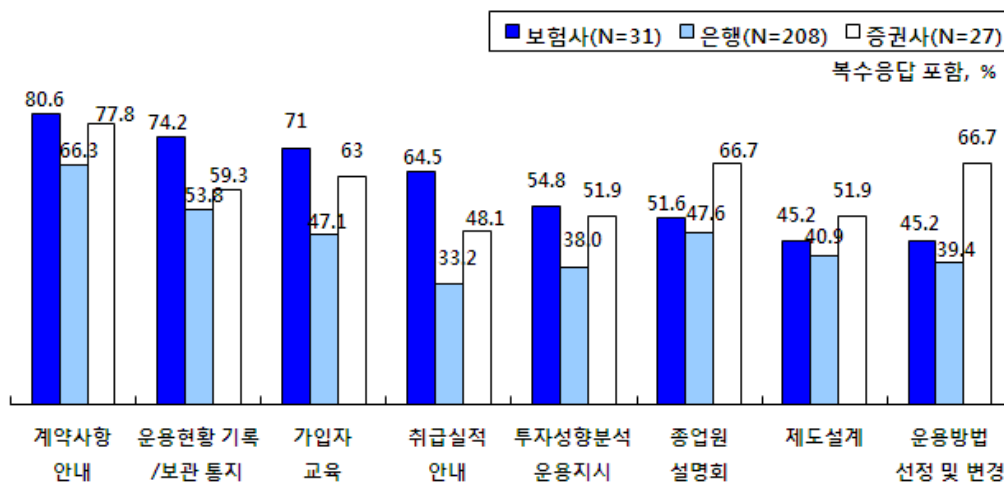
주: 복수응답 포함

□ 금융회사별로 보면 보험사는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 계약 사항 안내(80.6%) 등 11건의 서비스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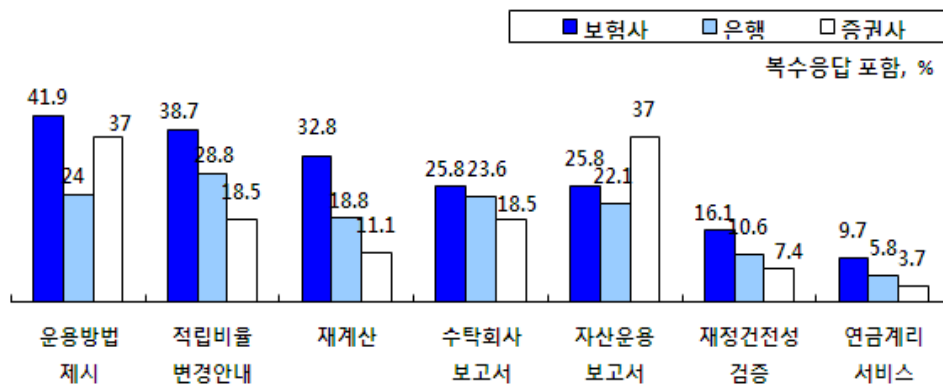
○ 증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66.7%) 등 4건의 서비스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음.

- 은행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1건도 존재하지 않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금융회사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Ⅰ)



<그림 6> 금융회사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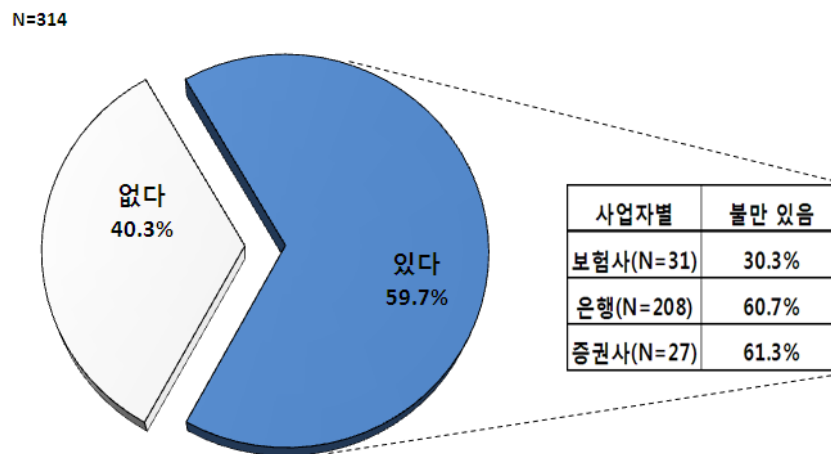
- 금융회사의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보험사가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다양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불만사항 및 사업자 변경의향

□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느꼈던 불만사항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후관리서비스 부실 등으로 응답기업의 약 59.6%가 불만사항이 존재함.

○ 은행에 가입한 기업은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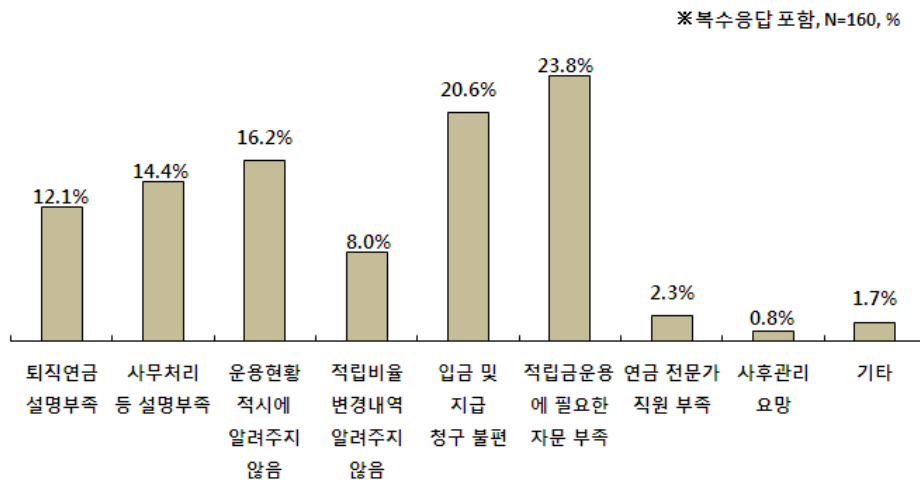
<그림 7>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불만정도



□ 특히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적립금운용에 필요한 자문 부족(23.3%), 입금 및 지급청구 불편(20.1%), 운용현황 정보제공 부족(15.9%) 등을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나타남.

○ 은행은 퇴직연금 설명 부족(14.1%), 연금전문가 직원 부족(2.5%)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불만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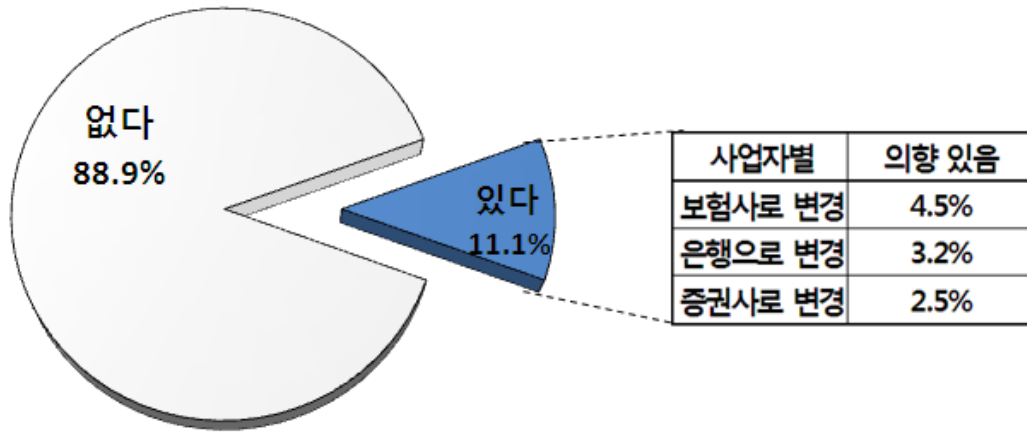
<그림8> 향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불만사항



- 보험사는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자문 부족(39.9%), 운용현황을 적시에 알려주지 않음(30%), 적립비율 변경내역을 알려주지 않음(20.1%) 등에서 불만정도가 높음.
- 증권사는 입금 및 지급 청구불편(26.3%), 사무처리 방법 등 설명 부족(15.8%) 등에서 불만정도가 높음.
- 또한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88.9%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변경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은행(3.2%) 및 증권사(2.5%)보다 보험사(4.5%)로 변경할 의향이 크다고 응답함.

<그림 9>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의향

N=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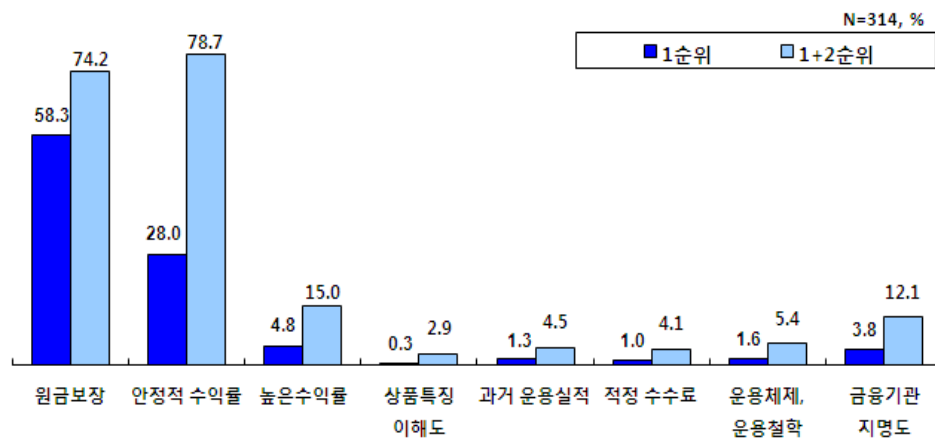


Ⅲ. 퇴직연금 인식실태

1. 퇴직연금 상품선택시 고려요인

-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할 때 원금보장 가능성, 안정적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상품선택시 중요 고려요인은 원리금보장 가능성(58.3%), 안정적 수익률(28.0%), 높은 수익률(4.8%), 금융기관 지명도(3.8%) 순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10> 퇴직연금 상품선택시 고려요인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대체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고 위험·고수익위주의 운용보다 저위험·저수익위주의 운용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중기업(근로자 20명~300명 미만)은 원리금 보장가능성을, 소기업(근로자 20명 이하)은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퇴

직연금 상품선택의 최우선 고려요인을 삼고 있음.

<표7> 기업규모별 상품선택시 고려요인(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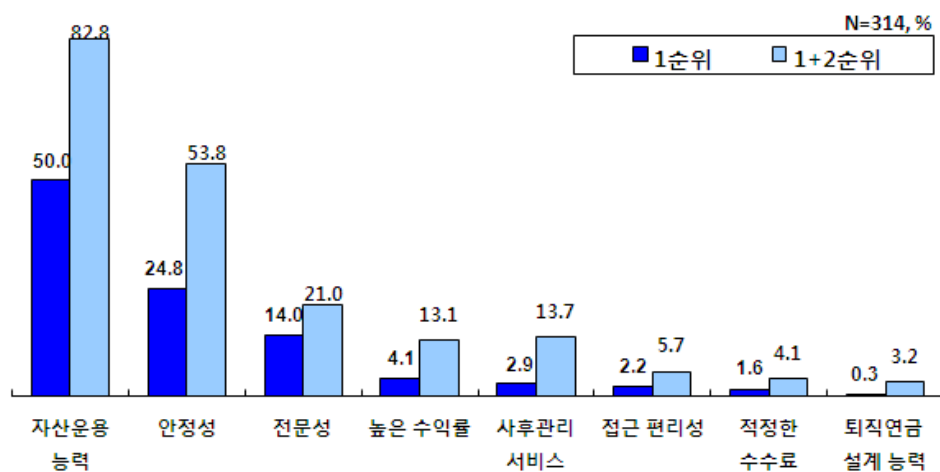
	원금보장 가능성	안정적 수익률	높은 수익률	기타
대기업(N=47)	59.6	27.7	6.4	6.3
중소기업(N=202)	61.4	25.7	4.0	8.9
소기업(N=65)	47.7	35.4	6.2	10.7

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고려요인

□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서는 자산운용능력, 재정건전성(안정성), 전문성, 서비스능력, 단기수익률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능력(50%), 재정건전성(24.8%), 전문성(14.0%) 등이 주요 고려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어 금융회사는 건전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기초한 자산운용능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1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고려요인



- 또한 확정급여형 가입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고려요인은 안정적 자산운용(47.2%), 재정건전성(26.9%), 전문성(14.2%), 높은 수익률(5.2%) 순으로 나타남.

<표8> 가입기업별 사업자선정시 고려요인(1순위)

(단위: %)

구분	연금사업자의 전문성	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높은 수익률	기타
확정급여형(N=212)	14.2	47.2	26.9	5.2	6.5
확정기여형(N=113)	15.9	54.9	18.6	3.5	7.1

- 확정기여형 가입기업은 안정적 자산운용능력(54.9%),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18.6%), 전문성(15.9%), 높은 수익률(3.5%) 순으로 사업자 선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정도

-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이용의 편리성 및 신속성, 사회적 인지도 등에서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안정성은 은행(4.09), 보험사(3.68), 증권사(3.31) 순, 자산운용능력은 은행(3.88), 보험사(3.60), 증권사(3.31) 순으로 나타남.

<표9>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 정도(N=314)

(단위: %)

구분	퇴직연금 에 대한 전문성	자산 운용 능력	컨설팅 서비스	안정성	적정한 수수료 책정	수익률 및 자산성장 가능성	이용 편리성 및 신속성	사회적 인지도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
은행	3.49	3.88	3.29	4.09	3.32	3.32	3.89	3.89	3.39
보험사	3.75	3.60	3.72	3.68	3.22	3.60	3.56	3.71	3.66
증권사	3.36	3.31	3.41	3.31	3.18	3.70	3.35	3.31	3.58

주 : 5점 척도 기준

□ 특히 보험사는 퇴직연금 전문성, 컨설팅 서비스, 다양한 운용 상품 제공능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인식함.

○ 전문성은 보험사(3.75), 은행(3.49), 증권사(3.36), 컨설팅서비스능력은 보험사(3.72), 증권사(3.41), 은행(3.29), 운용상품 제공능력은 보험사(3.66), 증권사(3.58), 은행(3.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증권사는 단기 수익률 및 자산의 성장가능성면에서만 은행 및 보험사보다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보아 전반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익률 등과 같은 단기적인 운용성과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

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38.9%)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외에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 16.6%, 중도인출 완화 11.5%,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 확보 9.6%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가입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체계 마련은 2.9%, 정책당국 홍보는 1.3%,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는 0.6%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구수준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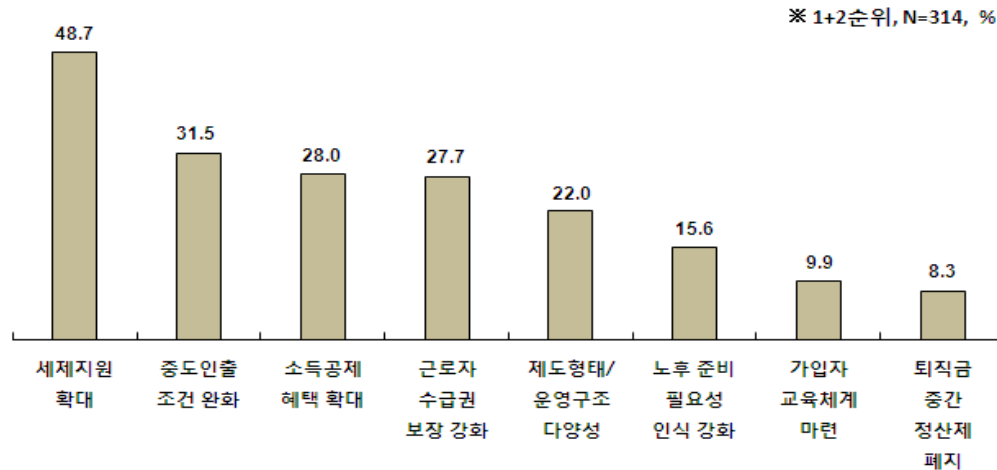
<표1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순위기준)

구분	응답(%)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38.9
중도인출 조건 완화	11.5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	7.6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	16.6
제도형태/ 운영구조 다양성	9.6
노후 준비 필요성 인식 강화	7.3
가입자 교육체계 마련	2.9
퇴직금 중간 정산제 폐지	3.8
당국의 제도 홍보 노력 강화	1.3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0.6

- 복수응답(1+2순위)에서는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48.7%), 중도인출조건 완화(31.5%), 근로자소득공제 혜택확대(28.05), 제도의 다양성 확보(22.0%)순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기업 및 근로자 세제지원,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II (1+2순위)



□ 특히 복수응답(1+2순위)에서는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48.7%), 중도인출 조건 완화(31.5%),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28.1%), 제도의 다양성확보(22.0%)순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기업 및 근로자 세제지원,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IV. 정책적 시사점

-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해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임.
-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고유부문(대출 등)과 신탁부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신탁자산이 고유부문과 명백히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예: 은행의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자행예금 운용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거래기업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모순 차단 필요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가 필요함
-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금지조항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업자책무에 포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 명시
- 대출만기 연장, 회사채 할인, 특별금리 제공 등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자체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별도 의무화

□ 둘째,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노력과 감독당국 차원의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임.

○ 충분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입기업들의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세 전환이 긴요

○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차원의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불만해소 방안을 모색

특히 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관련규정 강화를 적극 검토

□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요구된다는 점임.

○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관련 세제의 지원 확대 필요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적용확대,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장치 강화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에 적용되는 현행 “3년 퇴직금”에서 “5년 이상 퇴직금”으로 확대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범위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대폭 증대 필요

실질적인 수급권보호 장치 마련차원에서 미국의 연금지급금부공사(PBGC)와 같은 별도의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필요

□ 넷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상품선택 및 사업자 선정 고려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임.

○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상품선택 시 원리금보장가능성, 안정적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중심의 운용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 존재

기업별 상품선택 시 최우선 고려요인(대기업: 높은 수익률, 중기업: 원리금보장가능성, 소기업: 안정적인 장기수익률) 등으로 고려한 운용 전략 모색 필요

○ 건전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기초한 자산운용 능력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 필요

그 이유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능력(50%), 재무건전성(24.8%), 전문성(14.0%) 등을 주요 선정 고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의지와 제도개선, 사후관리서비스의 제공충실, 기업니즈에 기초한 운용전략 전환이 중요시됨.

저 자 약 력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이 상 우

일본 中央大學 상학 석사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swlee@kiri.or.kr)

CEO Report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발 행 일	2009년 10월 일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3775-9013)로 하여 주십시오.